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58

발의연월일: 2020. 9. 25.

발 의 자 : 홍정민 · 송기헌 · 양정숙

이용빈 · 조승래 · 서동용

오영훈 · 이소영 · 오영환

도종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그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건축물 등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에는 통상 상용 전원만 연결되어 있어, 화재·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비 고장 등으로 인해 정전이 될 경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되고 휴대전화를 통한 신고 및 구조 요청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 공급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축물·도시철도시설에 비상전력공급설비 설치 의무화를 통해 재난사고의 확대 및 대형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조제16호 신설, 제69조의2제2항).

법률 제 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352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란 구내에 「건축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건축주,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도시철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관로, 배관, 전원단자(비상전원설비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상전원단자를 포함한다), 통신용접지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69조의2제2항 중 "설치기준"을 "설치기준(비상전원 설치기준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7352호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7352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u><신 설></u>	16.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란
	구내에 「건축법」 제2조제1
	2호에 따른 건축주, 「주택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
	업주체, 또는 「도시철도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
	시철도건설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가 설치・관리
	하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관로, 배관, 전원단자(비상전
	원설비가 구비되어 있는 경
	우에는 비상전원단자를 포함
	한다), 통신용접지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69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제69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의 설치) ① (생 략)	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	②
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종	

류, 설치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 --설치기준(비상전원 설치기준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을 포함한다)</u>-----.